제429회국회(정기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최기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3767호)

2025.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지은

목 차

Ⅰ. 개요 ····· 1

Ⅱ. 주요 내용별 검토 ····· 3

1. 근로소득 증대세제 적용기한 연장 및 중소기업 공제율 상향 등 ···· 3
2. 통합고용세액공제 공제액 상향 등 ····· 12
3.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 ····· 27
4.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 특례 ····· 47
5.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 연장 등 ····· 57
6. 영구임대주택 수선유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64

Ⅰ. 개요

1. 최기상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3767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최기상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10. 28.

(3) 회 부 일 : 2025. 10. 29.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금을 인상하거나 고용을 늘린 기업 및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특례 규정들을 두고 있는데, 이들은 모두 2025년 12월 31일에 일몰이 종료될 예정임.

또한, 현행법은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며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으며, 65세 이상인 고령자, 장애인, 독립유공자 등에 대하여 저축원금이 5천만원 이하인 저축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을 비과세하도록 규정함.

하지만 근로자의 임금인상, 고용안정 및 사회적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위 기업 및 사회적기업 관련 특례들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나라의 소득계층 간 주택 자가점유율 격차 및 소

득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관련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한편, 영구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의 주택난 해소 등 주거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지만 노후화 심화 등으로 수선비가 급증하고 있어 안정적인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으로, 국가가 저소득층 서민이 거주하는 영구임대주택을 관리하는 공공주택사업자의 재무적 부담을 완화하여 공공재를 안정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위 특례들의 일몰기한을 각각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 영구임대주택의 노후화 등으로 인한 유지보수 및 기능향상을 위한 수선유지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4, 제29조의8, 제85조의6, 제87조제2항, 제88조의2제1항 및 제106조제1항4호의6 신설).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근로소득 증대세제 적용기한 연장 및 중소기업 공제율 상향 등(김주영의원안, 윤준병의원안, 이인선의원안, 조지연의원안, 추경호의원안, 정부안, 최기상의원안)

현 행	개정안
□ 근로소득 증대세제(제29조의4)	□ 적용기한 연장 및 중소기업 공제율 상향
□ 기본공제(제29조의4제1항)	□ 기본공제(제29조의4제1항)
○ 요건 ① 상시근로자의 해당 과세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이 직전 3개 과세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보다 클 것 ②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 대비 감소하지 않을 것	○ (현행과 같음)
○ 공제액: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의 <u>20%(중소기업)</u> 또는 10%(중견기업)	○ 공제액: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의 <u>25%(중소기업)</u> 또는 10%(중견기업) (조지연의원안)
○ 적용기한: <u>2025. 12. 31.</u>	○ 적용기한: <u>2027. 12. 31.(김주영의원안)</u> <u>2028. 12. 31.(조지연의원안, 추경호의원안, 정부안)</u> <u>2030. 12. 31.(윤준병의원안, 이인선의원안, 최기상의원안)</u>
□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임금증가분에 대한 추가 세액공제(제29조의4제3항)	□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임금증가분에 대한 추가 세액공제(제29조의4제3항)
○ 요건 ① 해당 과세연도에 정규직 전환 근로자가 있을 것 ②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 대비 감소하지 않을 것	○ (현행과 같음)
○ 공제액: 정규직 전환 근로자 임금증가분 합계액의 <u>20%(중소기업)</u> 또는 10%(중견기업)	○ 공제액: 정규직 전환 근로자 임금증가분 합계액의 <u>25%(중소기업)</u> 또는 10%(중견기업) (조지연의원안)

현 행	개정안
○ 적용기한: 2025. 12. 31.	○ 적용기한: 2027. 12. 31.(김주영의원안) 2028. 12. 31.(조지연의원안, 추경호의원안) 2030. 12. 31.(윤준병의원안, 이인선의원안, 최기상의원안)
□ 중소기업의 임금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제29조의4제5항)	□ 중소기업의 임금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제29조의4제5항)
○ 요건 ① 상시근로자의 해당 과세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이 전체 중소기업 임금증가율*보다 클 것 * 전체 중소기업 임금증가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 3.2% ('18·'19: 3.6%, '20·'21: 3.8%, '22: 3.0%, '23·'24: 3.2%) ②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 대비 감소하지 않을 것 ③ 직전 과세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이 음수가 아닐 것	○ (현행과 같음)
○ 공제액: 전체 중소기업의 평균임금 증가분을 초과하는 임금증가분의 20%	○ 공제액: 전체 중소기업의 평균임금 증가분을 초과하는 임금증가분의 25%(조지연의원안)
○ 적용기한: 2025. 12. 31.	○ 적용기한: 2027. 12. 31.(김주영의원안) 2028. 12. 31.(조지연의원안, 추경호의원안) 2030. 12. 31.(윤준병의원안, 이인선의원안, 최기상의원안) ○ 시행일: 2026. 1. 1.(김주영의원안, 이인선의원안, 조지연의원안, 추경호의원안, 정부안, 최기상의원안) 공포한 날(윤준병의원안)

* 김주영의원안 2025. 3. 20. 발의(의안번호 9144), 윤준병의원안 2025. 3. 20. 발의(의안번호 9180), 이인선의원안 2025. 5. 8. 발의(의안번호 10398), 조지연의원안 2025. 5. 16. 발의(의안번호 10537), 추경호의원안 2025. 8. 12. 발의(의안번호 12138), 정부안 2025. 9. 3. 제출(의안번호 12653), 최기상의원안 2025. 10. 28. 발의(의안번호 13767)

□ 각 개정안은 2025년 말 일몰 예정인 근로소득 증대세제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김주영의원안, 윤준병의원안, 이인선의원안, 조지연의원안, 추경호의원안, 최기상의원안은 법 제29조의4제1항에 따른 기본공제, 제3항에 따른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임금증가분 추가 세액공제 및 제5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임금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모두 연장하는 것인 반면, 정부안은 제29조의4제1항에 따른 기본 근로소득 증대세제의 적용기한만 연장하려는 것임.

한편, 조지연의원안은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인상하는 내용을 함께 포함하고 있음.

□ 현행법 제29조의4에 따른 근로소득 증대세제는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을 대상으로 임금증가분에 대해 세액공제하는 제도로서, 2014년 세법개정 당시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①근로소득 증대, ②배당소득 증대, ③기업소득 환류)'의 일환으로 신설되었음.

이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 추가공제 및 중소기업에 대한 임금증가 요건 완화, 공제율 상향 등 지속적으로 혜택이 확대되면서 적용기한이 연장되어 왔으며, 2022년 세법개정을 통해 대상기업에서 대기업을 제외하였음.

[근로소득 증대세제 주요 개정연혁]

시행시기	개정내용
2015년	□ 근로소득 증대세제 신설(제29조의4제1항) - 공제요건: 상시근로자의 해당 과세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이 직전 3개 과세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보다 클 것 - 공제금액: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의 10%(중소·중견), 5%(대)
2016년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추가 공제 신설(제29조의4제3항) - 공제요건: 해당 과세연도에 정규직 전환 근로자가 있을 것 - 공제금액: 정규직 전환 근로자 임금증가분 합계액의 20%(중소), 10%(중견), 5%(대)
2017년	□ 중소기업에 대한 임금증가 요건 완화(제29조의4제5항) - 공제요건: ① 상시근로자의 해당 과세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이 전체 중소기업 임금증가율(시행규칙 규정)보다 클 것 ② 직전 과세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이 음수가 아닐 것 - 공제금액: 전체 중소기업의 평균임금 증가분을 초과하는 임금증가분의 20%
2018년	□ 중소기업에 대한 공제율 상향 - 일반 근로소득 증대세제(제29조의4제1항) 공제율: 중소기업 10% → 20%
2021년	□ 적용기한 2년 연장 - 2021.1.1. ~ 2022.12.31.
2023년	□ 적용기한 3년 연장 및 공제대상에서 대기업 제외 - 2023.1.1. ~ 2025.12.31.

한편, 근로소득 증대세제의 조세지출 실적을 살펴보면, 중소기업에 대한 공제율이 10%에서 20%로 인상된 2018년에는 133억원, 2019년 124억원으로 증가하였으나, 2020년 109억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상황 악화에 따라 감소하였고 2022년과 2023년에는 다시 조세지출 규모가 증가하였으나 2024년에는 감소하였음.

[근로소득 증대세제 조세지출 규모]

(단위: 억원)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소득세	1	4	20	36	42	53	67	44	37	38
법인세	93	129	104	73	70	108	160	99	84	86
합계	94	133	124	109	112	161	227	143	121	124

주: 2025년, 2026년은 전망치임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 동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을 상향하는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첫째, 고용자 수를 감소시키지 않으면서 임금을 증가시킨 기업에 대하여 세제지원을 함으로써 근로소득 증대를 통해 가계의 가처분소득 증가를 유도하고, 종국적으로 민간소비 확대 및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음.

둘째, 동 특례는 2023년부터 중소기업과 중견기업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중소기업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공제율과 완화된 임금증가 요건 적용 등 우대조치가 마련되어 있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격차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조지연의원안과 같이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을 인상할 경우 임금격차 해소 효과가 강화될 것으로 보임.

참고로 통계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월 평균소득 격차는 287.4만원으로 소득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남.

[기업규모별 월 평균소득]

(단위: 만원)

구분	대기업(a)	중소기업(b)	평균소득 격차(a-b)
2023년	593	298	295
2022년	591	286	305
2021년	563	266	297
2020년	529	259	270
2019년	515	245	270
최근 5년 평균	558.2	270.8	287.4

자료: 연도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보수) 결과, 통계청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첫째, 동 특례의 목표는 신규고용 창출 및 기고용자의 임금상승을 통한 가계소득의 증대와 경제적 파급효과가 목표이지만, 세부담 감소가 익년도에 임금 및 고용의 증가를 발생시키지 않고 기업의 투자 혹은 사내유보를 증가시킬 우려는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1)]

둘째, 동 특례가 임금 인상의 유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인 필요에 따라 평균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인상한 기업을 사후적으로 보조하는 기능만 수행한다는 분석이 있음.[2)]

기업의 임금 인상은 인사·조직·재무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내리는 의사결정이라는 점, 임금 인상규모 만큼 세액이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평균적인 임금 인상분 대비 추가적인 인상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해당 추가 증가분의 일정 비율 만큼 세액공제가 이

1) 기획재정부·KDI공공투자관리센터, 「2019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2020.9. p.5

2) 기획재정부·KDI공공투자관리센터, 「2022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2022.12.. p.176

루어져 공제규모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동 특례의 효과는 경영여건이 양호한 기업이 내부적인 필요에 따라 평균 임금 상승률 이상으로 임금을 인상하는 경우 이를 보조하는 것에 그칠 우려가 있음.

셋째, 기획재정부는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공제율을 5%p 상향하는 개정안과 관련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현행 제도 하에서도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높은 공제율(20%)이 적용되고 있고, 중소기업의 임금 인상 여력이 낮은 점을 감안하여 전체 중소기업 평균 임금 증가율을 초과할 경우에도 공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중견기업 대비 완화된 요건을 적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것임.

넷째, 정부안은 법 제29조의4제1항에 따른 기본공제의 적용기한만 연장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정규직 전환 근로자 임금증가분 추가공제 및 제5항에 따른 중소기업 공제요건 완화에 대해서는 일몰기한을 연장하지 않으려는 것인데, 이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함.

먼저 정규직 전환 근로자 임금증가분 추가 세액공제의 경우 법 제29조의8에 따른 통합고용세액공제[3]의 경우에도 2024년 일몰이 도래

3)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통합고용세액공제) ④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2023년 6월 30일 당시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라 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급사업자에게 고용된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를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하거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하거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원사업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직접 고용하는 경우(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이라 한다)에는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해당하는 인원[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

한 정규직 근로자 전환에 따른 추가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연장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일관적인 조치로 볼 여지가 있으나, 정규직 전환을 통한 고용 안정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세제지원의 필요성은 있어 보임.

또한 법 제29조의4제5항은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중소기업의 임금 인상 여력이 낮은 점을 감안하여 전체 중소기업 평균보다 임금 증가율이 높을 경우 공제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이므로 제1항에 따른 기본공제의 적용기한을 연장한다면 제5항에 따른 중소기업 특례도 함께 연장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

이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는 법 제29조의4제3항에 따른 정규직 전환 근로자 임금증가분 추가공제와 제5항에 따른 중소기업 공제요건 완화에 대해서는 제출된 정부안과 달리 적용기한을 2028년 말까지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참고로 정부가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 상세본」에 따르면, 근로자 임금 증대 지원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4제1항, 제3항 및 제5항의 적용기한을 모두 2028년 말까지 연장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나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1,3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90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과세연도에 해당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2025년 세제개편안 상세본]

(20) 근로소득 증대세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29의4)

현 행	개 정 안
□ 근로소득 증대세제	□ 적용기한 연장
○ (적용대상) 중소 · 중견기업 ○ (적용요건) ❶&❷ 또는 ❷&❸ ❶ 당해연도 임금 증가율 >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 * 중소기업은 전체 중소기업 평균임금 증가율보다 높은 경우도 가능 ❷ 당해연도 상시근로자 수 ≥ 직전연도 상시근로자 수 ❸ 비정규직 근로자가 해당 과세연도에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임금이 상승한 경우 ○ (공제율) 3년 평균임금 증가율 초과 임금 증가분의 20%(중견 10%)	○ (좌 동)
○ (적용기한) '25.12.31.	○ '28.12.31.

<개정이유> 근로자 임금 증대 지원

□ 한편, 적용기한의 적정 수준에 대해서는, ① 적용기한을 길게 연장하는 경우 조세특례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기대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과 ② 적용기한을 짧게 연장하는 경우 조세특례에 대한 주기적·지속적 점검이 가능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154

2. 통합고용세액공제 공제액 상향 등

가. 통합고용세액공제 개요

□ 현행법 제29조의8에 따른 통합고용세액공제는 고용관련 기업부담 경감을 위해 기존에 운영되던 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 고용증대 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등을 통합함으로써 납세자 혼란을 방지하고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2022년 세법개정을 통해 신설되었음.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개요]

고용 관련 기존 세액공제

① **고용증대 세액공제**(모든 기업)

: 고용증가인원 × 1인당 세액공제액

구 분	공제액 (단위: 만원)			
	중소 (3년)		중견 (3년)	대기업 (2년)
	수도권	지방		
상시근로자	700	770	450	-
청년 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등	1,100	1,200	800	400

②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중소)

: 고용증가인원(2년) × 사용자분 사회보험료 × 공제율(일반 50%, 청년·경력단절여성 100%)

③ **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중소, 중견)

: 경력단절여성 채용자 인건비(2년) × 공제율(중소 30%, 중견 15%)

④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중소, 중견)

: 정규직 전환 인원(1년) × 공제액(중소 1,000, 중견 700)

⑤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중소, 중견)

: 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1년) × 공제율(중소 30%, 중견 15%)

⟹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 **기본공제**

: 고용증가인원 × 1인당 세액공제액

구 분	공제액 (단위: 만원)			
	중소 (3년)		중견 (3년)	대기업 (2년)
	수도권	지방		
상시근로자	850	950	450	-
청년 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 근로자** 등	1,450	1,550	800	400

■ **추가공제**

: 인원수 × 1인당 세액공제액(1년)

구 분	공제액 (단위:만원)	
	중소	중견
정규직 전환자, 육아휴직 복귀자	1,300	900

동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기업(소비성 서비스업 제외)에 대해 고용증가 인원당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기본공제에서는 고용증가 인원당 세액공제액이 공제되며 중소기업이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수도권은 850만원, 지방은 950만원, 중견기업이 상시근로자를 고용할 경우에는 450만원의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대기업은 공제가 적용되지 않음.

기본공제 중 우대공제는 청년정규직이나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 근로자 등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한 경우에 적용되며 수도권 중소기업은 1,450만원, 지방 중소기업은 1,550만원이 적용되며, 중견기업은 800만원, 대기업은 400만원의 공제가 적용됨.

2025년 3월 세법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우대공제 대상이 경력단절 여성에서 경력단절 근로자로 확대되어 경력단절자의 범위에 남성이 포함되었고, 경력단절 사유에 가족돌봄이 추가되었음.

기본공제는 중소·중견기업은 3년, 대기업은 2년간 지원되며, 2년 이내 상시근로자가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된 금액이 추징됨.

또한, 정규직전환자(2024년 말까지)와 육아휴직복귀자(2025년 말까지)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공제가 적용되어 중소기업은 1,300만원, 중견기업은 9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음.

다만 추가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하지 않아야 하며, 전환일과 복귀일로부터 2년 이내 근로관계가 종료될 경우 공제액 상당액이 추징됨.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조세지출 규모는 매년 증가하여 2026년에는 총 4조 6,340억원의 지출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통합고용세액공제 조세지출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소득세	10,761	13,524	15,917	18,523	19,976
법인세	18,814	22,379	22,190	24,564	26,364
합계	29,574	35,903	38,107	43,087	46,340

주 1) 2025, 2026년도는 전망치임
2) 기존 고용지원 세액공제 실적을 포함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 실적 집계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나. 기본공제 적용기한 연장(정일영의원안, 최수진의원안, 한병도의원안, 김주영의원안, 장철민의원안, 최은석의원안, 추경호의원안, 윤영석의원안, 정부안, 최기상의원안)

<table>
<tr><th>현 행</th><th>개정안</th></tr>
<tr><td>□ 통합고용세액공제(제29조의8)
○ 적용대상: 모든 기업
(소비성 서비스업 등 일부 제외)
○ 고용지원대상: 상시근로자(1년 미만 기간제, 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 제외)
○ 기본공제
- 고용증가인원×1인당 세액공제액
<table>
<tr><th rowspan="3">구 분</th><th colspan="4">공제액 (단위:만원)</th></tr>
<tr><th colspan="2">중소(3년 지원)</th><th rowspan="2">중견
(3년 지원)</th><th rowspan="2">대기업
(2년 지원)</th></tr>
<tr><th>수도권</th><th>지방</th></tr>
<tr><td>상시근로자</td><td>850</td><td>950</td><td>450</td><td>-</td></tr>
<tr><td>청년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 근로자 등</td><td>1,450</td><td>1,550</td><td>800</td><td>400</td></tr>
</table>
* 청년 연령범위(시행령): 15～34세
- 사후관리: 공제 후 2년 이내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하는 경우 공제금액 상당액 추징
○ 적용기한
- 2025. 12. 31.</td><td>□ 통합고용세액공제(제29조의8)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기본공제
- 개정안별 공제율 상이
○ 적용기한
- 2027. 12. 31.(한병도의원안, 김주영의원안, 윤영석의원안)
- 2028. 12. 31.(윤준병의원안, 김정호의원안, 최수진의원안, 장철민의원안, 최은석의원안, 추경호의원안, 정부안)
- 2030. 12. 31.(박정하의원안, 정일영의원안, 최기상의원안)</td></tr>
</table>

현 행	개정안
	○ 시행일 - 2025. 1. 1. (윤준병의원안, 김정호의원안) - 2026. 1. 1.(박정하의원안, 정일영의원안, 최수진의원안, 한병도의원안, 김주영의원안, 장철민의원안, 최은석의원안, 추경호의원안, 윤영석의원안, 정부안)

* 박정하의원안 2024. 6. 20. 발의(의안번호 702), 윤준병의원안 2024. 7. 22. 발의(의안번호 2065), 김정호의원안 2024. 9. 5. 발의(의안번호 3666), 정일영의원안 2025. 1. 22. 발의(의안번호 7695), 최수진의원안 2025. 1. 23. 발의(의안번호 7750), 한병도의원안 2025. 2. 28. 발의(의안번호 8592), 김주영의원안 2025. 3. 18. 발의(의안번호 9046), 장철민의원안 2025. 7. 1. 발의(의안번호 11186), 최은석의원안 2025. 7. 28. 발의(의안번호 11780), 추경호의원안 2025. 8. 12. 발의(의안번호 12138), 윤영석의원안 2025. 8. 21. 발의(의안번호 12284), 정부안 2025. 9. 3. 제출(의안번호 12653), 최기상의원안 2025. 10. 28. 발의(의안번호 13767)

□ 개정안은 기업의 고용 확대를 지속적으로 장려하기 위해 현행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한병도의원안, 김주영의원안 및 윤영석의원안은 기본공제의 적용기한을 2027년 말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임.

윤준병의원안, 김정호의원안, 최수진의원안, 장철민의원안, 최은석의원안, 추경호의원안 및 정부안은 기본공제의 적용기한을 2028년 말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

박정하의원안, 정일영의원안 및 최기상의원안은 기본공제의 적용기한을 2030년 말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

□ 개정안은 기업의 채용 확대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여 기업이 고용을 확대할 유인을 제공하며, 세제지원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함으로써 기업이 안정적인 고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통합고용세액공제 연장에 따른 세수감소 효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조세지출 규모는 매년 증가하여 2026년에는 총 4조 6,340억원의 지출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통합고용세액공제 조세지출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소득세	10,761	13,524	15,917	18,523	19,976
법인세	18,814	22,379	22,190	24,564	26,364
합계	29,574	35,903	38,107	43,087	46,340

주 1) 2025, 2026년도는 전망치임
2) 기존 고용지원 세액공제 실적을 포함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 실적 집계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둘째, 통합고용세액공제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양한 재정사업이 진행되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고용 지원 사업 현황]

대상	사업명	사업내용 및 편성현황
근로자	지역고용 촉진지원금	- 고용위기지역으로 사업을 이전하거나 신설 또는 증설하는 사업주가 해당 지역에 3월 이상 거주한 구직자를 6개월 이상 채용하는 경우 월 통상임금의 1/2 (대규모기업은 1/3) 최대 1년간 지원 - 2025년도 예산: 59억원
청년	청년일자리도약	- 취업애로청년 등 채용 후 6개월 고용 시 사업주 월

대상	사업명	사업내용 및 편성현황
	장려금	최대 60만원(최대 720만원) 지원 - 2025년도 예산: 10만명 지원분(7,772억원 편성)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고용 장려금	-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 - 2025년도 예산: 75.6만명 지원분(3,774억원 편성)
고령자	고령자계속고용 장려금	- 계속고용제도(재고용, 정년 연장·폐지)를 도입하여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 대해 근로자 1명당 최대 3년 동안 1,080만원의 계속고용장려금을 지원 - 2025년도 예산: 357억원 편성
경력단절 여성	고용유지장려금	- 새일센터에 구직 등록한 미취업 경력단절여성의 인턴 연계 기업에 인턴 기간(3개월) 동안 인턴지원금 지급(월 80만원, 최대 240만원) - 인턴 종료 후 상용직 또는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해당 기업에 고용유지장려금 지급(80만원) - 2025년도 예산: 정규채용 후 12개월 고용유지 시 기업에 고용유지장려금 추가지급(80만원)

셋째, 기업 규모별 또는 소재지별 공제액 변화의 차이를 이용한 분석결과 통합고용세액공제의 확대가 상시근로자 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중장기적으로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일몰 종료를 목표로 축소 연장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조세특례 심층평가 결과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4)]

기획재정부 역시 「2022 조세특례 심층평가: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결과[5)]를 근거로 기업의 신규채용 의사결정에서 세제혜택은 고려사항이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는 바, 통합고용세액공제가

4) 기획재정부, 「2025 조세특례 심층평가: 통합고용세액공제」, 2025. 9.

5) 수혜기업 심층면담시 기업의 채용 의사결정시 신규채용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할 급여 등 비용적 측면을 고려할 뿐, 사전적으로 세제지원 제도를 고려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남

고용을 확대한 기업을 사후적으로 지원하고 있을뿐 신규고용 창출을 유도하는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넷째, 기업이 고용 관련 조세지원을 항구화된 제도로 인식할 경우 조세특례 제도의 효과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6)]

한편, 적용기한의 연장 기간에 대하여는 개정안마다 3년 또는 5년의 기간을 제안하고 있는데, 적용기한의 적정 수준에 대해서는, ① 적용기한을 길게 연장하는 경우 조세특례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기대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과 ② 적용기한을 짧게 연장하는 경우 조세특례에 대한 주기적·지속적 점검이 가능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154

6) 기획재정부, 「2025 조세특례 심층평가: 통합고용세액공제」, 2025. 9.

다. 육아휴직 복귀자 추가공제 적용기한 연장 등(최수진의원안, 윤준병의원안, 이용우의원안, 추경호의원안, 정준호의원안, 정부안, 서영교의원안, 최기상의원안)

<table>
<tr><th>현 행</th><th>개정안</th></tr>
<tr><td>

□ 통합고용세액공제(제29조의8)

○ 적용대상: 모든 기업
(소비성 서비스업 등 일부 제외)

○ 기본공제
- 고용증가인원×1인당 세액공제액

<table>
<tr><th rowspan="3">구 분</th><th colspan="4">공제액 (단위:만원)</th></tr>
<tr><th colspan="2">중소(3년 지원)</th><th rowspan="2">중견
(3년 지원)</th><th rowspan="2">대기업
(2년 지원)</th></tr>
<tr><th>수도권</th><th>지방</th></tr>
<tr><td>상시근로자</td><td>850</td><td>950</td><td>450</td><td>-</td></tr>
<tr><td>청년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
근로자 등</td><td>1,450</td><td>1,550</td><td>800</td><td>400</td></tr>
</table>

- 공제 후 2년 이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공제금액 상당액 추징

○ 추가공제
- 정규직 전환·육아휴직 복귀자

<table>
<tr><th rowspan="2">구 분</th><th colspan="2">공제액(단위:만원)</th></tr>
<tr><th>중소</th><th>중견</th></tr>
<tr><td>정규직 전환자
(1년 지원)</td><td>1,300</td><td>900</td></tr>
<tr><td>육아휴직 복귀자
(1년 지원)</td><td>1,300</td><td>900</td></tr>
</table>

※ 전체 상시근로자 수 미감소 필요

- 전환일·복귀일로부터 2년 이내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계 종료시 공제금액 상당액 추징

○ 적용기한:
정규직 전환: 2024. 12. 31.
육아휴직 복귀자:

</td><td>

□ 육아휴직 복귀자 추가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공제액 인상 등

○ (현행과 같음)

○ 개정안별 상이

○ 추가공제
- 정규직 전환·육아휴직 복귀자

<table>
<tr><th rowspan="2">구 분</th><th colspan="2">공제액(단위:만원)</th></tr>
<tr><th>중소</th><th>중견</th></tr>
<tr><td>정규직 전환자
(1년 지원)</td><td>1,300</td><td>900</td></tr>
<tr><td>육아휴직 복귀자
(1년 지원)</td><td>1,300
1,500
(정준호의원안)</td><td>900
1,100
(정준호의원안)</td></tr>
</table>

※ 전체 상시근로자 수 미감소 필요

- (현행과 같음)

○ 적용기한:
정규직 전환: (현행과 같음)
육아휴직 복귀자:

</td></tr>
</table>

현 행	개정안
2025. 12. 31.	2026. 12. 31.(이용우의원안, 정부안) 2027. 12. 31.(서영교의원안) 2028. 12. 31.(최수진의원안, 추경호의원안, 정준호의원안, 정부안) 2030. 12. 31.(윤준병의원안, 최기상의원안) ○ 시행일: 공포한 날(최수진의원안, 윤준병의원안) 2026. 1. 1.(이용우의원안, 추경호의원안, 정준호의원안, 정부안, 서영교의원안, 최기상의원안) ○ 적용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정준호의원안)

* 최수진의원안 2025. 1. 23. 발의(의안번호 7750), 윤준병의원안 2025. 3. 20. 발의(의안번호 9180), 이용우의원안 2025. 8. 5. 발의(의안번호 11981), 추경호의원안 2025. 8. 12. 발의(의안번호 12138), 정준호의원안 2025. 8. 28. 발의(의안번호 12471), 정부안 2025. 9. 3. 제출(의안번호 12653), 서영교의원안 2025. 9. 16. 발의(의안번호 13025), 최기상의원안 2025. 10. 28. 발의(의안번호 13767)

□ 개정안은 통합고용세액공제 중 육아휴직 복귀자 복직 시 복귀자 1인당 1,300만원(중소기업) 또는 900만원(중견기업)을 세액공제하는 추가공제 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함으로써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을 권장하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려는 것임.

정준호의원안은 이에 더하여 육아휴직 복귀자 1인당 공제세액을 200만원씩 인상하려는 것임.

□ 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 공제제도는 2018년 세법개정을 통해 처음 도입되었는데, 당시에는 육아휴직 후 복귀한 대상자에게 지급한 1년치 인건비에 대하여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5%의 공제율이 적

용되었고 2020년 세법개정을 통해 중소기업 30%, 중견기업 15%로 공제율이 인상되었음.

이후 본 조세특례는 2022년 세법개정을 통해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추가공제항목으로 재편성되면서 현행법과 같이 복귀자 1인당 중소기업 1,300만원, 중견기업 900만원의 세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개편되었음.

또한, 개편 전까지는 복직 후 1년 이상 근무하지 않은 경우 공제금액을 추징했던 반면, 통합고용세액공제 도입과 함께 복직 후 근속기간이 2년으로 요건이 강화되었음.

□ 개정안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육아휴직 복귀자를 복직시킬 경우 1년간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거나 공제액을 인상하려는 것으로,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함으로써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

2024년 들어 9년 만에 처음으로 연간 합계출산율이 반등하였으나, 우리나라의 저출생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상황으로 저출생 대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육아휴직 활성화가 필요한 상황임.

[합계출산율 추이]

(단위: 명)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1.21	1.24	1.17	1.05	0.97	0.91	0.84	0.81	0.78	0.72	0.75

자료: 통계청

또한, 기업체 규모별 육아휴직 사용률을 살펴보면 기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육아휴직 사용률 역시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어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근로자의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기업체 규모별 육아휴직 사용률]

(단위: %)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미상	15.7	15.8	13.4	14.3	13.1	16.5	14.2	17.6	13.8
4명 이하	10.8	10.4	10.7	10.1	11.3	11.8	11.8	17.1	18.8
5~49명	13.4	13.8	15.0	15.8	17.8	19.6	21.1	26.4	29.7
50~299명	13.9	14.8	17.0	18.6	20.9	22.8	24.8	29.9	32.3
300명 이상	25.0	26.2	28.0	29.6	30.5	31.7	32.9	36.2	37.4
계	19.1	20.0	21.6	22.5	24.0	25.5	27.0	31.2	32.9

주: 각 연도별 출생아 부모 중 해당연도 육아휴직을 시작한 사람을 육아휴직대상자로 나누어 100분율로 표시, 육아휴직대상자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고 재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를 말함.
자료: 통계청, 육아휴직통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면 출산의향이 증가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3.2%(남성 87.6%, 여성 89.1%)였고, 육아휴직을 신청하지 않는 사유로 경력 및 승진·배치 등 불이익 염려 등이 제시되었음.

[육아휴직을 신청하지 않는 사유별 동의 비율]

(단위: %)

구 분	전체	남성	여성
경력 및 승진, 배치 등 불이익이 염려되어	89.1	87.4	90.9
사내눈치 등 조직문화 때문에	87.4	84.7	90.2
육아휴직기간 동안의 소득감소 때문	84.6	84.4	84.8
육아휴직 등으로 동료 등에게 폐를 끼칠까봐	80.9	79.2	82.6
경력유지, 커리어개발 등으로 일을 계속하고 싶어서	79.1	72.2	86.4
신청했으나 회사에서 허락하지 않아서	66.0	62.9	69.2

자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4년 결혼·출산·양육 인식조사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서는 육아휴직 대상자 뿐만 아니라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육아휴직 및 휴직기간 이후 복귀를 허용할 경제적 유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어 보임.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측면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첫째,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재정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현재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7]의 경우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 1인당 연간

---

7)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 ①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별표 1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본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 1]
- 제조업: 상시근로자 500명 이하
- 건설업, 정보통신업 등: 상시근로자 300명 이하
- 도(소)매업, 금융업 등: 상시근로자 200명 이하
- 그 밖의 업종: 상시근로자 100명 이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

360만원에서 최대 870만원의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음.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자녀 연령		1개월 지급액	연간총액
육아휴직지원금	만 12개월 이내	(특례) 첫 3개월 200만원[1] 이후 30만원	870만원
	만 12개월 초과	30만원	360만원
	남성육아휴직 인센티브 (추가지원)[2]	10만원	12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일반	30만원	360만원
	육아기 단축 인센티브 (추가지원)[3]	10만원	120만원

주 1) 특례: 만 12개월 이내 자녀(임신 중 포함), 3개월 이상 연속 부여시 첫 3개월간 월 200만원, 이후 월 30만원
2) 남성육아휴직 인센티브: 사업장별 남성육아휴직 1~3번째 사례에 대해 월 10만원 추가 지원
3) 육아기단축 인센티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가 최초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에는, 세 번째 허용 사례까지 월 10만원을 추가 지급
자료: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2025년부터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대체인력 고용 시 정부지원금에 지방자치단체의 추가 지원금까지 더해 연간 최대 1,840만원[8]의 지원금이 지급되고,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업무분담 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분담 수당 등)을 지급한 경우 월 20만원이 지원됨.

둘째, 육아휴직 복귀자 추가공제 제도 도입이 중견기업의 육아휴직

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1. ~ 5. (생 략)

8) (정부지원금) 연 1,440만원 + (대중소 상생협력기금, 기업지원) 200만원 + (지자체, 근로자 지원) 최대 200만원

복귀자 수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중장기적으로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일몰 종료를 목표로 축소 연장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조세특례 심층평가 결과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9]

셋째, 기업이 고용 관련 조세지원을 항구화된 제도로 인식할 경우 조세특례 제도의 효과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10]

문 의 처
02)6788-5154

9) 기획재정부, 「2025 조세특례 심층평가: 통합고용세액공제」, 2025. 9.

10) 기획재정부, 「2025 조세특례 심층평가: 통합고용세액공제」, 2025. 9.

3.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

가. 적용기한 연장 등

현 행	개정안
□ 사회적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85조의6제1항)	□ 적용기한 연장
○ 대상: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 (현행과 같음)
○ 감면율: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 (현행과 같음)
○ 적용기한: 2025. 12. 31. * 2022년 세법개정으로 3년 연장됨	○ 적용기한: 2028. 12. 31.(엄태영의원안, 정부안) 2027. 12. 31.(서영교의원안) 2030. 12. 31.(최수진의원안, 윤준병의원안, 최기상의원안)
	○ 시행일: 2026. 1. 1.(최수진의원안, 엄태영의원안, 정부안, 서영교의원안, 최기상의원안) 공포한 날(윤준병의원안)
□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 (제85조의6제2항)	□ 적용기한 연장 또는 폐지
○ 대상: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은 내국인	○ (현행과 같음)
○ 감면율: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 감면율: 현행 유지(이종욱의원안, 최수진의원안, 윤준병의원안, 엄태영의원안, 정부안, 서영교의원안, 최기상의원안)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이후 5년간 30%, 이후 영구적으로 20%(최은석의원안)
○ 적용기한: 2025. 12. 31 * 2022년 세법개정으로 3년 연장됨	○ 적용기한: 2025. 12. 31.까지 인증받은 경우 영구 적용(최은석의원안) 2027. 12. 31.(이종욱의원안, 서영교의원안) 2028. 12. 31.(엄태영의원안, 정부안)

현 행	개정안
	2030. 12. 31.(최수진의원안, 윤준병의원안, 최기상의원안) ○ 시행일: 2026. 1. 1.(이종욱의원안, 최수진의원안, 엄태영의원안, 정부안, 서영교의원안, 최기상의원안) 공포한 날(윤준병의원안) 공포후 6개월(최은석의원안) ○ 적용례: 이 법 시행 이전에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은 경우에도 적용(최은석의원안)

* 이종욱의원안 2025. 1. 7. 발의(의안번호 7297), 최수진의원안 2025. 1. 24. 발의(의안번호 7800), 윤준병의원안 2025. 3. 20. 발의(의안번호 9180), 최은석의원안 2025. 3. 20. 발의(의안번호 9163), 엄태영의원안 2025. 6. 20. 발의(의안번호 10956), 정부안 2025. 9. 3. 제출(의안번호 12653), 서영교의원안 2025. 9. 12. 발의(의안번호 12931), 최기상의원안 2025. 10. 28. 발의(의안번호 13767)

□ 각 개정안은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거나 2025년 말까지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은 내국인에 대하여 영구적인 세액공제를 적용하려는 것임.

1) 사회적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최수진의원안, 윤준병의원안, 엄태영의원안, 정부안, 서영교의원안, 최기상의원안)

□ 현행법 제85조의6제1항에 따른 사회적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2007년 7월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에 따라 사회적기업[11]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7년 세법개정을 통해 신설되었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적용기한이 연장되어 왔음.

제도 도입 당시에는 최초로 소득 발생 후 4년간 50%를 감면하는 것이었으나 2012년 세법개정 시 5년간 50% 감면으로 감면기간이 확대되었으며, 2013년 세법개정으로 현행과 같이 소득발생 후 3년간 100%를 감면하고 그 후 2년간 50%를 감면하는 것으로 감면율이 상향되었음.

이후 취약계층 고용 유도를 위하여 2019년 세법개정을 통해 연간 감면한도를 "1억원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상시근로자 수 × 2천만원"으로 설정하였음.

□ 2024년 12월 기준 총 4,829개 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12]되었으

---

11)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자를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2) 사회적기업의 인증 요건(「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①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합자조합, 특별법에 의한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등
②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 수행
③ 사회적 목적 실현(30% 이상 취약계층 고용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
④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

며, 이 중 3,762개 기업이 현재 운영 중임.

[사회적기업 인증 및 운영현황(연도별)]

구분	'07~'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계
신청	2,068	481	427	326	306	372	555	519	657	532	526	335	7,104
인증	1,080	265	295	265	256	312	392	429	500	428	371	236	4,829
현재 운영	628	164	189	190	191	248	321	375	452	404	364	236	3,762

자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또한, 현재 운영 중인 3,762개 중 789개(21.0%)는 비영리법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반면, 상법상 회사 등 영리법인 형태로 운영되는 기업은 2,973개(79.0%)로서 영리법인인 사회적기업이 전체 사회적기업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조직형태별 사회적기업 현황]

(단위: 개, %)

비 영 리 789개소 (21.0%)					영 리 2,973개소 (79.0%)			
민법상 법인	비영리 민간단체	사회복지 법인	사회적 협동조합	기타법인 및 단체	상법상 회사	농(어)업 회사법인	영농(어) 조합법인	협동 조합
311 (8.3%)	54 (1.4%)	71 (1.9%)	353 (9.4%)	- (0.0%)	2,349 (62.4%)	188 (5.0%)	109 (2.9%)	327 (8.7%)

주: 괄호 안은 전체 사회적기업 수 대비 비중임
자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개정안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점에서 긍정적인 입법취지를 인정할 수 있을 것임.

첫째, 사회적기업이 취약계층[13]을 노동시장으로 유도하여 양질의

⑤ 영업활동을 통한 총수입이 노무비의 50% 이상
⑥ 정관, 규약 등을 갖출 것
⑦ 회계연도별 배분가능한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회사·합자조합만 해당)

13) 13)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취약계층의 구체적 기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취약계층(이하 "취약계층"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일자리를 확대하고, 사회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사회적기업의 육성을 장려하고 경영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2023년 사회서비스 수혜대상 유형별 사회적기업(사회서비스 제공형 및 혼합형) 수를 분석한 결과,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479개, 일반인이 수혜대상인 기업은 178개로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수가 약 2.7배 정도 많았음.

또한, 최근 3년간 사회적기업이 고용한 전체 유급근로자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2023년 기준 사회적기업이 고용한 유급근로자 71,950명 중 64.5%인 46,385명이 취약계층으로서 취약계층의 고용 증대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14]

이처럼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공급[15]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 등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므로 그 육성을 장려하는 차원

---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피해자
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중 또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
8.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9.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10.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 대상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장해를 입은 경우 그 구조피해자 및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나.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12. 그 밖에 1년 이상 장기실업자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 “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사람

14)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23 사회적기업 성과분석”, 2024.11.

15) 사회적기업과 관련해서는 복합적인 정책목표가 있으나 기본적으로 일자리창출,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이 중요한 목표로 설정되어 왔음. 이에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한 요건 중 하나로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이 설정되어 있음.

에서 세제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임.

둘째, 사회적기업 중 경영여건이 좋지 않은 기업이 상당하므로 세액감면을 통해 사회적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여건 조성에 기여하고 자생력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음.

최근 3년간 사회적기업의 당기순이익(순실) 분포를 살펴보면, 전체 사회적기업 중 30% 이상이 매년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 있고, 당기순이익을 기록하고 있는 기업들 중 절반에 가까운 기업들이 연간 3천만원 이하의 당기순이익을 보이고 있음.

[최근 3년간 사회적기업 당기순이익(손실) 분포]

(단위: 개소, %)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기업 수	비중	기업 수	비중	기업 수	비중
-5천만원 미만	395	12.9	393	11.6	487	13.7
-5천만원 ~ -1천만원	407	13.3	438	12.9	488	13.7
-1천만원 ~ 0원	162	5.3	185	5.5	183	5.1
0원 ~ 3천만원	979	32.4	1,141	33.6	1,193	33.6
3천만원 ~ 5천만원	274	8.9	321	9.5	306	8.6
5천만원 ~ 1억원	332	10.8	381	11.2	333	9.4
1억원 ~ 3억원	344	11.2	385	11.3	387	10.9
3억원 ~ 5억원	85	2.8	72	2.1	95	2.7
5억원 이상	72	2.4	78	2.3	83	2.3
합계	3,050	100.0	3,394	100.0	3,555	100.0

주: 당기순이익(손실)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연도별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셋째, 사회적기업은 의무적으로 이익의 일정 부분을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하여야 하므로,[16] 감면세액을 공익적인 목적에 재투자하여 사회적 효용을 증대시키는 선순환을 유도하기 위하여 일반기업에 비해 우대하여 세액감면 혜택을 부여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측면이 있음.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측면을 감안할 필요가 있어 보임.

첫째, 정부가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재정사업을 수행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적용기한 연장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음.

고용노동부는 민간시장 진입단계별 맞춤형 판로지원, 3단계(초기 경영지원→사업화 및 전문화→사업 확장 및 시장 진출) 성장 지원 체계 마련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2025년 284억 1,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음.

둘째, 사회적기업의 자생력 제고 및 사회적가치 창출을 유도하기 위하여 장기적으로는 공제요건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따르면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23. 9.) 발표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패러다임이 기존의 '획일적 육성'에서 '자생력 제고'로 전환된 만큼 세제혜택의 경우에도 일률적 지원이 아닌 사회적가치 및 성과 등을 평가하여 지원 여부 및 수준을

16)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사회적기업의 인증 요건 및 인증 절차) ①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7.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것(「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인 경우만 해당한다)

정하도록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음.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의 획일적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의 결과 고용창출 효과가 미미하고 정부의 과도한 지원이 일반 중소기업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지적 또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사회적기업 인증요건만 충족하면 사회적가치 창출 정도와 관계없이 동일한 지원을 받는 구조로 사회적가치 제고 유인이 부족한 실정이라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154

2)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이종욱 의원안, 최수진의원안, 윤준병의원안, 최은석의원안, 엄태영의원안, 정부안, 서영교의원안, 최기상의원안)

□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8호[17]에 따라 장애인 고용 인원·고용비율 및 시설·임금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의미함.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장애인을 10명 이상, 전체 고용인원의 30% 이상 고용하고,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며,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함.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2012년 인증제도 도입 이후 각종 지원정책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연도별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업체 수 현황]

(단위: 개)

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개수	331	391	473	566	622	694	797

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7)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 고용 인원·고용비율 및 시설·임금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3조(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기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8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
1. 장애인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일 것
2.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을 별표에 따라 산정한 인원 이상을 고용할 것
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출 것
4.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

□ 현행법 제85조의6제2항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은 내국인에 대하여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3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를 감면하고, 그 후 2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50%를 감면함으로써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설립을 촉진하려는 제도로서, 2010년 세법개정으로 2011년부터 시행되었음.

이후 감면율 상향 및 한도 신설 등이 이루어졌으며 적용기한이 4번 연장되어 2025년 말 일몰 도래 예정임.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 연혁]

시행연도	내 용
2011년	·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 신설 - 대상: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정받은 내국인 - 감면기간 및 감면율: 소득발생 후 4년간 50% - 적용기한: 2013년 12월 31일
2013년	· 감면기간 연장 - 감면기간 및 감면율: 소득발생 후 5년간 50%
2014년	· 감면율 상향 및 적용기한 연장 - 감면율: 소득발생 후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 적용기한: 2016년 12월 31일
2017년	· 적용기한 연장 - 적용기한: 2019년 12월 31일
2020년	· 감면한도 신설 및 적용기한 연장 - 감면한도: 1억원 + 취약계층 상시근로자수 × 2,000만원 - 적용기한: 2022년 12월 31일
2023년	· 적용기한 연장 - 적용기한: 2025년 12월 31일

□ 이종욱의원안, 최수진의원안, 윤준병의원안, 엄태영의원안, 정부안, 서영교의원안, 최기상의원안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세액 감면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이고, 최은석의원안은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기간을 현행 5년(최초 3년 100%, 이후 2년 50%)에서 영구적(최초 3년 100%, 4~5년 50%, 6~10년 30%, 11년~ 20%)으로 확대하려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효과가 기대되는 측면이 있음.

첫째, 경쟁노동시장에서 직업활동이 곤란한 장애인의 불리한 고용여건을 개선하고 양질의 노동환경을 제공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확대하는 효과가 기대됨.

최근 고용률 추이를 보면 2020년 이후 전체 인구 고용률은 증가추세에 있는 반면, 장애인 고용률은 2022년부터 감소하는 추세로 장애인 고용현황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반면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세제지원의 적용기한 또는 감면기간을 연장 및 확대함으로써 안정적인 장애인 고용하방을 유지할 필요성을 일부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장애인 및 전체 근로자 고용률 현황]

(단위: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5월
장애인	34.9	34.9	34.6	35.3	34.0	33.8
전체	60.9	60.1	60.5	62.1	62.6	63.5

자료: 통계청

둘째, 민간의 자발적인 장애인 고용창출을 통하여 장애인 소득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우리나라의 장애인 관련 공공사회지출은 GDP 대비 0.83%로 OECD 평균(2.26%)의 1/3 수준에 그치고 있는데,[18] 민간분야의 장애인 고용 촉진을 통해 이러한 장애인 소득보장 제도의 미흡함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장애인 고용기업체 대상 설문조사 결과 장애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장려금 지원 등 사업주에 대한 지원제도 적용을 위해 고용하고 있는 비율도 9.6%에 달하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겠음.

[장애인 근로자 채용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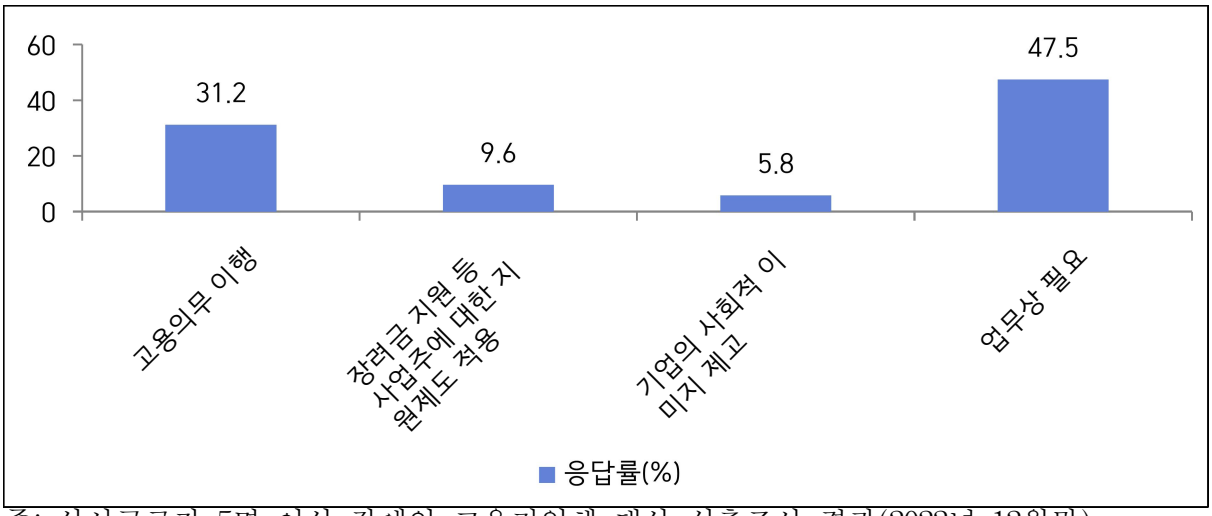

주: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장애인 고용기업체 대상 심층조사 결과(2022년 12월말)
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23년 기업체장애인고용실태조사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측면을 감안할 필요가 있어 보임.

첫째, 현재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하여 동 특례에 따른 세제지원 외에 공공기관 우선구매,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서 등 각종 수

18)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 장애인정책 재정지출의 구성과 추이, 2023. 12.

수료 비용 감면, 무상지원금 지급 등 다양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설립을 지원하고 판로 확대 및 자생력 제고 등을 위하여 2025년 총 528억 8,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음[19].

또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20]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을 우선구매하여야 하는데,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우선구매 실적은 매년 증가하여 2024년도 총 구매액은 목표 비율을 상회한 8,760억원(총 구매액의 1.25%)에 달함[21].

둘째, 적용기한의 적정 수준에 대해서는, ① 적용기한을 길게 연장하는 경우 조세특례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기대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과 ② 적용기한을 짧게 연장하는 경우 조세특례에 대한 주기적·지속적 점검이 가능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

19) 지원금액(억원): ('20) 274 → ('21) 285 → ('22) 364 → ('23) 449 → ('24) 529 → ('25) 529

2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3(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 등)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물품·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한 물품과 제공하는 용역(이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이라 한다)을 우선구매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매계획에는 공공기관별 총구매액(물품과 용역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비용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목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의계약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21) 우선구매 목표 비율(%): ('19년)0.3 → ('20년~'22년)0.6 → ('23년~'24년)0.8
우선구매 실적(%): ('19년)0.78 → ('20년)0.91 → ('21년)0.92 → ('22년)1.01 → ('23년)1.16 → ('24년)1.25

문 의 처
02)6788-5154

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 세액공제 신설(최은석의원안)

현 행	개정안
□ <신 설>	□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제85조의11)
○	○ 공제대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같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제외)의 생산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지출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	○ 공제율: 25%
○	○ 적용기한: 없음
○	○ 시행일: 공포 후 6개월
○	○ 적용례: 이 법 시행 이후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비용을 지출하는 경우부터 적용

* 최은석의원안 2025. 3. 20. 발의(의안번호 9163)

□ 개정안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4제1항[22]에 따

---

2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 고용 인원·고용비율 및 시설·임금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22조(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 ③ 제2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장애인표준사업장을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28조·제29조 및 제33조를 적용할 때에는 그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를 해당 사업주가 고용하는 근로자 수(다만, 여성·중증장애인을 제외한 장애인은 그 총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수를 말하며, 그 수에서 소수점 이하는 올린다)에 포함하고, 해당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해당 사업주의 사업장으로 본다. 다만, 해당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제2조제8호에 따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기간이 속하는 월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2조의4(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인증 및 인증취소) ①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운영하려는 자는 제2조제8호의 기준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3조(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기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
1. 장애인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일 것
2.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을 별표 2에 따라 산정한 인원 이상을 고용할 것
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출 것

라 인증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같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제외)에서 생산한 물품을 구매할 경우 지출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25%를 당해연도 소득세(사업소득에 한정)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임.

□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일반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장애인에 대한 안정된 일자리 창출과 사회통합을 기반으로 장애인고용기업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장애인 고용을 통해 기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임[23].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크게 자회사형 표준사업장과 일반 표준사업장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24],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은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모회사)가 장애인 고용을 목적으로 발행주식 또는 출자총액의 50% 초과를 투자하여 자회사(장애인 표준사업장)를 설립하고 자회사에서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모회사에서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고용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사업장을 말하고, 일반 표준사업장은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을 말함.

□ 개정안은 내국인이 일반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생산된 상품을 구

---

4.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

23)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표준사업장 사업안내서」,

24)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및 일반 표준사업장 외에 중증장애인 일자리(고용) 등에 대한 국가책임 실현과 장기적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유지를 목적으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청, 공공기관이 민간기업과 공동으로 참여하는 '컨소시엄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1개소가 운영 중임(2025년 3월말 기준)

매하는 경우 해당 구매비용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하려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음.

첫째,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을 구매할 경제적 유인을 제고함으로써 경쟁노동시장에서 직업활동이 곤란한 장애인의 불리한 고용여건을 개선하고 양질의 노동환경을 제공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확대하는 효과가 기대됨.

최근 고용률 추이를 보면 2020년 이후 전체 인구 고용률은 증가추세에 있는 반면, 장애인 고용률은 2022년부터 감소하는 추세로 장애인 고용현황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장애인 및 전체 근로자 고용률 현황]

(단위: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5월
장애인	34.9	34.9	34.6	35.3	34.0	33.8
전체	60.9	60.1	60.5	62.1	62.6	63.5

자료: 통계청

이처럼 전체 장애인 고용현황은 악화되고 있는 반면,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업체 및 표준사업장 내 장애인 근로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5년 3월말 기준 809개소의 표준사업장(자회사형 172개소, 컨소시엄형 1개소, 일반 636개소)이 운영중임[25].

25) 2020년 473개소 11,115명 → 2021년 566개소 12,656명 → 2022년 622개소 14,407명

[연도별 표준사업장 인증업체 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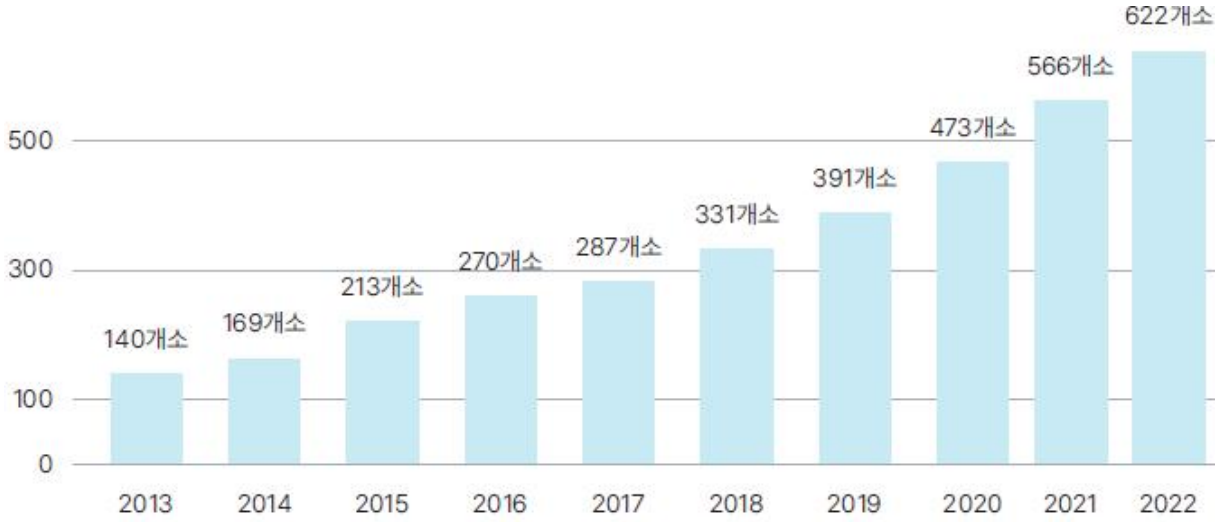

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세액공제를 도입할 경우 장애인 고용 하방 유지라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유지 및 확대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둘째, 민간의 자발적인 장애인 고용창출을 통하여 장애인 소득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장애인 표준사업장 유지·확대에 대한 지원을 늘릴 필요가 있음.

우리나라의 장애인 관련 공공사회지출은 GDP 대비 0.83%로 OECD 평균(2.26%)의 1/3 수준에 그치고 있는데,[26]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킴으로써 간접적으로 민간분야의 장애인 고용 촉진을 도모할 수 있고, 이는 장애인 소득보장 제도의 미흡함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측면을 감안할 필요가 있어

2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 장애인정책 재정지출의 구성과 추이, 2023. 12.

보임.

첫째, 현재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하여 공공기관 우선구매,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서 등 각종 수수료 비용 감면, 무상지원금 지급 등 다양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설립을 지원하고 판로 확대 및 자생력 제고 등을 위하여 2025년 총 528억 8,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음.

또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27]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을 우선구매하여야 하는데,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우선구매 실적은 매년 증가하여 2023년도 총 구매액은 목표 비율을 상회한 8,427억원(총 구매액의 1.16%)에 달함[28].

둘째,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을 목적으로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제도가 마련되어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27)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3(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 등)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물품·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한 물품과 제공하는 용역(이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이라 한다)을 우선구매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매계획에는 공공기관별 총구매액(물품과 용역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비용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목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의계약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28) 우선구매 목표 비율(%): ('19년)0.3 → ('20년~'22년)0.6 → ('23년)0.8
우선구매 실적(%): ('19년)0.78 → ('20년)0.91 → ('21년)0.92 → ('22년)1.01 → ('23년)1.16

현행법 제85조의6제2항[29]에 따라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은 내국인에 대하여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3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를 감면하고, 그 후 2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50%를 감면하는 세액감면 제도가 운영중임.

현행 장애인 표준사업장 법인세 감면 제도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직접 지원하는 제도이고, 개정안이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 세액공제는 생산품을 구매하는 기업에 대하여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것이지만, 두 제도가 궁극적으로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운영 지원이라는 동일한 취지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별도의 특례 신설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임.

문 의 처
02)6788-5154

29)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②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은 내국인은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4.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 특례

가. 개요

□ 주택청약종합저축[30]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소득자에 대해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연 300만원 한도)의 40%를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해 줌으로써 무주택 서민·중산층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는 제도임.

동 제도의 납입한도는 연간 300만원이고,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가 같이 적용되는 경우 해당 공제금액과 합산하여 연 400만원 한도[31]가 적용되며,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까지 같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제금액과 합하여 연 800만원(「소득세법」 제52조제6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각 호에 따른 공제한도액)[32]을 한도로 소득공제가 이루어짐.

---

30) 주택청약종합저축이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등 신규 분양주택에 청약하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 상품으로, 「주택법」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는 입주자저축을 의미함. 주택청약종합저축은 1인 1계좌만 개설 가능함.

31) 「소득세법」
제52조(특별소득공제) ④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이하 이 항 및 제5항에서 "세대"라 한다)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5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과 주택 및 오피스텔에 딸린 토지를 포함하며, 그 딸린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하는 금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이 연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한도초과금액"이라 한다)은 없는 것으로 한다.

32) 「소득세법」
제52조(특별소득공제) 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가 취득 당시 제99조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table>
<tr><th colspan="7">공제한도</th><th>현 행</th></tr>
<tr><td colspan="7" rowspan="2">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조특법 §87②)</td><td>120만원</td></tr>
<tr><td>400만원</td></tr>
<tr><td rowspan="4">+</td><td colspan="5" rowspan="2"></td><td>800만원</td></tr>
<tr><td rowspan="4">주택임차자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소득세법 §52④)</td><td rowspan="4">+</td><td rowspan="4">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소득세법 §52⑤)</td><td rowspan="3">15년 이상</td><td>원칙</td><td>800만원</td></tr>
<tr><td>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td><td>1,800만원</td></tr>
<tr><td>고정금리 + 비거치식</td><td>2,000만원</td></tr>
<tr><td>10년 이상</td><td>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td><td>600만원</td></tr>
</table>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계좌 수는 2025년 9월 말 기준 2,511만 계좌로 나타나고 있음.

저당차입금(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승계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 한다)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 상환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하는 금액과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의 합계액이 연 800만원(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하여 적용하며,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공제한도”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⑥ 제5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 800만원 대신 그 해당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도로 하여 제5항 본문을 적용한다.

1.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금리 방식(이하 이 항에서 “고정금리”라 한다)으로 지급하고, 그 차입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이하 이 항에서 “비거치식 분할상환”이라 한다)으로 상환하는 경우: 2천만원
2.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고정금리로 지급하거나 그 차입금을 비거치식 분할상환으로 상환하는 경우: 1천800만원
3.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고정금리로 지급하거나 그 차입금을 비거치식 분할상환으로 상환하는 경우: 600만원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현황]

(단위: 좌)

연도	2021.12	2022.12	2023. 12.	2024. 12.	2025. 9.
계좌 수	26,772,724	26,381,295	25,613,522	25,172,173	25,115,926

자료: 한국부동산원(청약Home)

동 소득공제는 지난 2010년 신설된 이후 적용기한 없이 운영되어 오다가, 2017년 세법개정으로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적용기한이 신설되었고, 2019년 세법개정으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2022년 세법 개정으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2회 적용기한이 연장되었음.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에 따른 조세지출 규모는 2024년에 400억원이며, 2026년에는 468억원으로 전망됨.

[연도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세제감면 조세지출 현황]

(단위: 억원)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전망)	2026년 (전망)
△295	△357	△415	△396	△400	△445	△468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문 의 처
02)6788-5149

나.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윤재옥의원안, 김영진의원안, 윤준병의원안, 김형동의원안, 추경호의원안, 엄태영의원안, 서영교의원안, 최기상의원안, 정부안)

현 행	개정안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제87조제2항)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 적용대상: 근로소득자로서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	○ 적용대상: (현행과 같음)
○ 공제액: 해당 과세기간에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연 300만원 한도)의 40%	○ 공제액: (현행과 같음)
○ 중도해지 시 감면세액 미추징 사유 - 저축자의 사망 - 해외이주	○ 중도해지 시 감면세액 미추징 사유 - 저축자의 사망 -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정부안)
○ 적용기한: 2025년 12월 31일까지	○ 적용기한: 2027년 12월 31일까지 (김영진의원안, 서영교의원안) 2028년 12월 31일까지 (윤재옥의원안, 추경호의원안, 엄태영의원안, 정부안) 2029년 12월 31일까지 (김형동의원안) 2030년 12월 31일까지 (윤준병의원안, 최기상의원안)

* 윤재옥의원안 2025. 2. 27. 발의(의안번호 8417), 김영진의원안 2025. 2. 27. 발의(의안번호 8520), 윤준병의원안 2025. 3. 20. 발의(의안번호 9180), 김형동의원안 2025. 7. 24. 발의(의안번호 11691), 추경호의원안 2025. 8. 1. 발의(의안번호 11946), 엄태영의원안 2025. 8. 13. 발의(의안번호 12147), 서영교의원안 2025. 9. 9. 발의(의안번호 12819), 최기상의원안 2025. 10. 28. 발의(의안번호 13767),정부안 2025. 9. 3. 제출(의안번호 12653)

□ 9건의 개정안은 2025년 12월 31일자로 일몰될 예정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기한을 연장함으로써 서민·중산층의 주택마련을 위한 세제지원을 계속하려는 것으로,

김영진의원안 및 서영교의원안은 2027년 12월 31일까지(2년간), 윤재옥의원안, 추경호의원안, 엄태영의원안 및 정부안은 2028년 12월 31일까지(3년간), 김형동의원안은 2029년 12월 31일까지(4년간), 윤준병의원안, 최기상의원안은 2030년 12월 31일까지(5년간) 각각 적용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는 적용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첫째, 서민·중산층의 주택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을 통해 주거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저소득층의 자가보유율은 하락추세에 있는 반면, 중위 가구의 자가보유율은 소폭 증가 추세이며 상위가구의 자가보유율은 증가추세에 있다가 최근 감소세에 있음.

[소득별 자가점유율]

(단위: %)

연도	2014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2년	2023년
전체	58.0	59.9	61.1	61.1	61.2	60.6	61.3	60.7
하위 (1~4분위)	50.0	48.5	49.3	48.8	48.2	46.9	47.8	47.3
중위 (5~8분위)	56.4	62.2	63.8	63.6	62.9	64.5	65.5	64.0
상위 (9~10분위)	77.7	79.3	79.9	81.5	81.9	80.2	80.5	78.3

주: 소득분위는 「2023년 주거실태조사」에서 조사된 가구소득 10분위수를 기준으로 구분
자료: 2023년도 주거실태조사 - 요약보고서, 2024. 12, p.46

또한, 동 조사에 따르면 2023년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은 중위수 기준 6.3배로 2006년 이후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전반적으로 주택구입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소득이 낮을수록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이 높아져(소득 하위가구 8.7배, 중위가구 6.3배, 상위가구 5.7배) 소득이 낮을수록 주택마련에 더욱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소득별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

(단위: 배)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전체	중위수	5.6	5.6	5.5	5.4	5.5	6.7	6.3	6.3
	평균	6.3	6.4	6.7	6.8	7.3	8.9	9.1	8.1
하위	중위수	9.8	8.3	9.0	6.8	8.0	9.4	10.0	8.7
	평균	11.6	11.1	12.0	9.0	9.6	14.1	14.9	13.2
중위	중위수	5.6	5.2	5.2	5.5	6.0	6.3	6.3	6.3
	평균	6.2	6.2	6.4	6.2	6.8	8.4	8.6	7.7
상위	중위수	5.0	4.8	4.8	3.6	3.9	7.1	6.4	5.7
	평균	5.0	5.3	5.7	4.3	4.5	8.1	7.9	7.2

자료: 국토교통부, “2023년도 주거실태조사-요약보고서-”, 2024. 12, p. 51.

둘째, 2023년 귀속소득 기준 전체 연말정산신고 근로소득자 2085.2만명의 4.99%에 해당하는 104만명 가량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주택마련저축[33] 소득공제를 적용받았고 동 소득공제 적용 규모가 증가추세에 있는 점을 감안하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가 폐지될 경우 상당 수의 근로소득자들이 사실

33) 국세통계연보상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가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 부득이하게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을 합산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기준으로 하였음.

상의 증세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연도별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적용비율]

(단위: 명, %, 백만원, 만원)

구 분	연말정산신고 근로소득자(A)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적용 근로소득자(B)	적용비율 (B/A)	공제 소득
2021년	19,959,148	1,037,378	5.2	459,601
2022년	20,534,714	1,063,010	5.18	442,728
2023년	20,852,234	1,039,888	4.99	409,116

자료: 각 년도 국세통계연보, 4-2-4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현황Ⅳ

□ 다만, 다음의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의 효과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2025년 기획재정부가 실시한 조세특례 심층평가 결과에 따르면[34], ① 개인들이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주택청약저축의 가치는 4,637만원인데, 그 중 대부분인 4,250만원은 주택청약을 통해 얻게 되는 자본이익에서 도출된 반면, 소득공제의 가치는 전체 주택청약저축의 가치 중 3%만을 차지하고 있어 소득공제가 주택청약저축의 가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고, ② 소득공제 제도가 없어질 경우 주택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가입자의 비율도 3.84% 수준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③ 1인당 경감세액이 37,997원 수준으로 크지 않아 소득공제의 금액적인 측면에서는 주택 마련에 실질적인 효과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

34) 2025 조세특례 심층평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및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2025.9. 기획재정부

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주택청약종합저축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소득공제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효과적인 수단인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임.

[총급여구간별 경감세액]

(단위: 명, 억원, 원)

귀속 연도	총급여 구간	공제인원	공제금액	1인당 소득공제금액	경감세액	1인당 경감세액
2023	1천만원 이하	5,145	10.32	200,538	0.62	12,032
	4천만원 이하	418,384	1,483.72	354,632	103.80	24,809
	7천만원 이하	554,942	2,352.35	23,891	248.73	44,821
	전체	97,8471	3,846	393,102	372	37,997

자료: 2025 조세특례 심층평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및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2025.9. 기획재정부

둘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는 약 20년 이상 장기간 운영되어 왔으나 세대 및 인구구조 변화와 같은 현재 및 미래의 정책환경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근본적인 제도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감안할 필요가 있음[35].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중 부양가족 및 부양자녀가 없는 수혜자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36], 최근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수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37], 세대간 주거 소비 특성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단순히 적용

35) 2025 조세특례 심층평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및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2025.9. 기획재정부

36) 부양가족이 있는 수혜자는 2013년 52%에서 2023년 26%로 감소하였고, 부양자녀가 있는 수혜자는 2013년 28%에서 2023년 6%로 감소함.

37) 2021.12. 기준 26,772,724계좌에서 2025.9. 기준 25,115,926계좌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임.

기간을 연장하기보다는 정책환경의 변화에 상응한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 또한, 적용기한의 연장 범위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기대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용기한을 길게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과 조세특례에 대한 주기적·지속적 점검을 위하여 적용기한을 짧게 설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겠음.

□ 참고로,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개정안과 같이 주택청약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경우, 연 평균 412억원의 세수 감소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됨.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세수추계 결과(2027~2030년)]

(단위: 억원)

	2027	2028	2029	2030	누적	연평균
윤재옥의원안 추경호의원안 엄태영의원안	-412	-412	-412		-1,237	-412
김영진의원안	-412	-412			-825	-412
김형동의원안	-412	-412	-412	-412	-1,650	-412

또한, 기획재정부는 정부제출안에 따를 경우, 2027년에서 2029년까지 3년간 총 1422억원(연평균 474억 원)[38]의 소득세수가 감소할 것으

38)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항목과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항목의 추계액을 합산한 금액임.

로 추계하고 있음.

[정부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세수추계 결과(2027～2029년)]

(단위: 억원)

	2027	2028	2029	누적	연평균
정부안	△474	△474	△474	△1,422	△474

문 의 처
02)6788-5149

5.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 연장 등(정부안등)

현 행	개정안
□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제88조의2)	□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 연장
○ 대상자: - 65세이상인 거주자,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기초생활수급자 등	○ 대상자: - 의원안: (현행과 같음) - 정부안: 65세이상인 거주자로서 기초연금 수급자(정부안),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기초생활수급자 등
○ 비과세한도: 5천만원	○ 비과세한도: - (현행과 같음)
○ 적용기한: 2025년 12월 31일까지	○ 적용기한: - 2026년 12월 31일: 송석준의원안 - 2027년 12월 31일: 이종욱·서영교의원안 - 2028년 12월 31일: 이만희의원안, 정부안 - 2029년 12월 31일: 추경호의원안 - 2030년 12월 31일: 윤준병의원안

* 이만희의원안 2024. 12. 4. 발의(의안번호 6200), 이종욱의원안 2024. 12. 30. 발의(의안번호 7075)
송석준의원안 2025. 1. 2. 발의(의안번호 7210), 윤준병의원안 2025. 3. 20. 발의(의안번호 9180)
추경호의원안 2025. 8. 21. 발의(의안번호 12297), 정부안 2025. 9. 3. 제출(의안번호 12653)
서영교의원안 2025. 9. 9. 발의(의안번호 12819), 최기상의원안 2025. 1. 28. 발의(의안번호 13767)

□ 개정안은 2025년 12월 31일자로 일몰될 예정인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려는 내용과 과세특례 적용대상자를 정비하려는 내용임.

구체적으로 1년 연장하는 안(송석준의원안), 2년 연장하는 안(이종욱·서영교의원안), 3년 연장하는 안(이만희의원안, 정부안), 4년 연장하는 안(추경호의원안), 5년 연장하는 안(윤준병의원안)이 제시되

었음.

이에 더하여, 정부안은 과세특례 적용 대상자 중 65세 이상인 거주자 요건을 65세 이상 거주자로서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39]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로 강화하려는 것임.

□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40]는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인 거주자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저축원금 5천만원 이하인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함으로써 사회적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임.

동 과세특례는 저축상품 간 중복되는 과세특례를 조정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4년 세법개정으로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하여 저축원금 3천만원까지 이자·배당소득을 저율

---

39) 「기초연금법」
제3조(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등) ①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선정기준액"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선정기준액을 정하는 경우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한다.

40)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1명당 저축원금이 5천만원(제89조에 따른 세금우대종합저축에 가입한 거주자로서 세금우대종합저축을 해지 또는 해약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5천만원에서 해당 거주자가 가입한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하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이하 이 조에서 "비과세종합저축"이라 한다)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65세 이상인 거주자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상이자(傷痍者)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7.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9%) 분리과세하던 세금우대종합저축[41]과 동일한 대상에 대하여 저축원금 3천만원까지 이자·배당소득을 비과세하던 생계형저축을 통합·재설계하여 “비과세종합저축”으로 명칭을 변경한 것으로,

2025년 9월 실시한 조세특례 심층평가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비과세종합저축의 총 계좌 수는 약 1,008만개, 가입자 수는 약 542만명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

[비과세종합저축 가입현황]

(단위: 개, 명, 백억원)

연도	계좌 수	신규 계좌수	해지 계좌수	가입자 수	한도금액
2020년말	7,799,461	6,889,402	7,082,289	4,230,086	12,956
2021년말	7,912,717	7,038,086	7,016,097	4,346,098	13,512
2022년말	8,903,875	9,759,520	8,836,983	4,897,897	15,965
2023년말	9,605,841	8,940,672	8,378,731	5,187,421	17,211
2024년말	10,085,000	9,476,829	9,101,001	5,416,950	18,271

자료 :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조세특례 심층평가), 기획재정부, 2025. 9.

조세지출은 2021년 2,575억원 규모였으나 2023년 5,461억원으로 증가하였고, 2026년 9,643억원대 조세지출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기획재정부는 조세지출 규모가 급격히 증가한 것은 금리 상승[42]에 따른 이자소득 증가가 주요 원인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41) 20세 이상 일반가입자에 대하여도 저축원금 1천만원을 한도로 이자·배당소득 9% 분리과세를 허용하였으나 2014년 세법개정으로 이들에 대한 분리과세 혜택은 폐지되었음.

42) 한국은행 기준금리: 연1.25%(2022년1월)→ 연3.25%(2023년 1월)

[연도별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지출 현황]

(단위: 억원)

연도	2021(실적)	2022(실적)	2023(실적)	2024(실적)	2025(전망)	2026(전망)
감면액	2,575	2,554	5,461	9,091	8,964	9,643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는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음.

첫째, 자산불평등도가 심해지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하여는 생계안정과 자산형성 지원을 계속 도모할 필요가 있음.

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2024년 자산이 가장 적은 1분위는 평균 -669만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자산이 가장 많은 10분위는 평균 20억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체의 44%에 해당하는 자산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순자산 10분위별 가구 점유율]

순자산 10분위별	2017		2024	
	평균 순자산 (만원)	점유율 (%)	평균 순자산 (만원)	점유율 (%)
전체	31,572	100.0	44,894	100.0
순자산 1분위	-666	-0.2	-669	-0.1
순자산 2분위	2,565	0.8	3,067	0.7
순자산 3분위	6,187	2.0	7,689	1.7
순자산 4분위	10,622	3.4	13,365	3.0
순자산 5분위	15,912	5.0	20,185	4.5

순자산 10분위별	2017		2024	
	평균 순자산 (만원)	점유율 (%)	평균 순자산 (만원)	점유율 (%)
순자산 6분위	22,050	7.0	28,280	6.3
순자산 7분위	29,536	9.4	38,803	8.6
순자산 8분위	40,131	12.7	55,032	12.3
순자산 9분위	57,393	18.2	83,629	18.6
순자산 10분위	131,916	41.8	199,516	44.4

자료: 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순자산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순자산 지니계수[43]는 2017년 0.584에서 2024년 0.612로 해마다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순자산 지니계수 현황]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순자산 지니계수	0.584	0.588	0.597	0.602	0.603	0.606	0.605	0.612

자료: 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둘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국가유공자, 월남전 참전 고엽제휴유의증환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에 대한 지원은 이들의 국가에 대한 공로와 헌신을 고려한 것으로 두터운 지원을 계속적으로 도모할 필요가 있음.

□ 다음, 정부안의 과세특례 적용 대상자 중 '65세 이상인 거주자' 요건을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로 정비하는 안은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필요한 조치로 보임.

43) 순자산 지니계수: 순자산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써 '0'이면 완전평등, '1'이면 완전불평등을 의미함

첫째, 동 과세특례의 적용 대상간 형평성을 강화하고 제도의 취지에 보다 부합하는 점이 있음.

동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이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독립유공자, 고엽제후유증환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등 사회적 약자 혹은 유공자인 점을 고려할 때 소득요건과 관계 없이 65세 이상의 거주자모두에게 같은 수준의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취약계층의 생계안정 지원이라는 동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참고로,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44]는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인 사람으로 소득인정액은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하는 기준선으로 2025년 기준 소득인정액은 단독가구 2,280,000원, 부부가구 3,648,000원 이하임.

둘째, 인구 고령화로 인한 조세지출 증대 규모, 재정여건 등을 고려할 때 동 제도의 정비를 통해 세수기반을 확충할 필요가 있음.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자의 대다수(93.6%, 507만명)가 65세 이상 거주자로 단순한 연령 기준만으로 과세특례 대상을 설정하는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음.

---

44) 「기초연금법」
제3조(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등) ①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선정기준액"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선정기준액을 정하는 경우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한다.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자 유형별 현황(2024년 12월 기준)]

구분	계좌수	가입자수
장애인	569,572	303,253
국가유공상이자	39,019	19,746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31,799	20,162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7,406	3,664
고엽제후유의증환자	1,425	629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556	311
65세 이상 거주자	9,435,223	5,069,185

자료 :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조세특례 심층평가), 기획재정부, 2025. 9.

□ 다만, 정부안은 요건을 65세 이상인 거주자로서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기초연금법」[45]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는 65세 이상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65세 이상 요건은 중복되어 삭제하는 자구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161

45) 「기초연금법」
제3조(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등) ①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선정기준액"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선정기준액을 정하는 경우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한다.

6. 영구임대주택 수선유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최기상의원안)

현 행	개 정 안
□ 부가가치세의 면제(제106조제1항) <신 설>	□ 면제대상에 영구임대주택 수선유지용역 추가(제4호의6 신설) ○ 영구임대주택 시설물의 노후화 등으로 인한 유지보수 및 기능향상을 위한 수선유지용역(추가시설설치 용역 포함) □ 부 칙 ○ 시행일: 2026년 1월 1일

* 최기상의원안 2025. 10. 28. 발의(의안번호 13767)

□ 개정안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1항[46]에 따라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이하 "영구임대주택"라 함) 시설물의 노후화 등으로 인한 유지보수 및 기능향상을 위한 수선유지용역(추가시설설치용역 포함)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영구임대주택을 안정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공공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에 따라 영구임대주택(50년), 국민임대주택(30년), 행복주택(30년), 통합공공임대주택(30년), 장기전세주택(20년) 등으로 구분됨.[47]

---

46)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공공임대주택의 매각제한)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임대주택을 5년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임대의무기간(50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매각할 수 없다.

47)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공공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① 법 제5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임대의무기간"이란 그 공공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1. 영구임대주택: 50년
2. 국민임대주택: 30년
3. 행복주택: 30년
4. 통합공공임대주택: 30년
5. 장기전세주택: 20년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 중 임대 조건을 신고할 때 임대차 계약

영구임대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임.

□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4호[48]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 포함)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있음. 이러한 조세특례는 주택이 없는 서민이 부가가치세 부담없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국가의 정책목적상 지원을 하기 위한 것임.

그러나, 영구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수선유지공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있어 공공주택사업자[49]에게 재무적 부담으로

기간을 6년 이상 10년 미만으로 정하여 신고한 주택: 6년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 중 임대 조건을 신고할 때 임대차 계약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정하여 신고한 주택: 10년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 5년

48)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49)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공공주택사업자)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공공주택사업자를 지정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3.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설립한 법인
6. 주택도시기금 또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총지분의 전부(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초과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출자(공동으로 출자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를 공동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주택법」
제4조(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①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戶數)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

작용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어, 제21대국회에서도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음.[50]

[한국토지주택공사 주거복지 사업 연도별 손익 (예측)현황]

(단위: 만호, 조)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보유현황)	105.6	113.4	124.6	137.3	144.6	152.3	160.5	168.4	175.4	182.2
임대비용*	3.0	3.3	3.5	3.7	4.1	4.6	5.0	5.4	5.8	6.3
임대수익	1.4	1.6	1.7	1.8	1.9	2.0	2.1	2.2	2.3	2.4
운영손익	△1.6	△1.7	△1.8	△1.9	△2.2	△2.6	△2.9	△3.2	△3.5	△3.9

주: 수선유지공사 예산은 2020년도 9천억원이며, 2025년도는 1조 4천억원으로 추정됨.
자료: 한국토지주택공사

□ 한편, 수선유지용역에는 근거 법률에 따라 노후시설개선사업, 그린리모델링사업, 유지보수공사, 장기수선공사, 건축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용역, 급경사지 점검 용역, 재난위험시설 안전점검용역, 소방시설 점검용역 등이 있음.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2. 한국토지주택공사
3. 지방공사
4.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
5.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주택조합(제5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주택조합만 해당한다)
6.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제5조제3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고용자만 해당하며, 이하 "고용자"라 한다)

50) 공공임대주택의 수선유지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자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864호, 고용진의원 대표발의, 2021.10.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860호, 박대출의원 대표발의, 2022.10.19.)이 제출되었고, 2건의 개정안은 임기만료폐기 되었음.

[수선유지용역의 종류]

수선유지용역 종류	주기	근거 및 용역 내용
노후시설개선사업	수시	장기공공임대주택법 영구, 50년 임대 노후시설개선
그린리모델링사업	수시	영구임대, 매입임대
유지보수공사	수시	전용, 공용부 노후시설 하자보수 공공임대주택 전체
장기수선공사	수시	장기수선주기에 따른 시설물 교체공사 공공임대주택 전체
건축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	4년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급경사지 점검 용역	1년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재난위험시설 안전점검용역	수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소방시설 점검 용역	1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승강기정밀안전 검사용역	1년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임대주택 재임대세대 입주청소 용역	1년	임대주택 퇴거 후 재임대를 위해 입주청소 시행
수선유지공사 물량산출 용역	수시	임대주택 수선유지공사를 위한 조사/설계/물량 산출 용역 시행
하자만료 점검 용역	수시	임대주택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전에 하자 발췌 점검용역 시행

자료: 한국토지주택공사

□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될 수 있음.

첫째, 기초생활수급자 등 최저소득 계층이 주거하는 영구임대주택을 관리하는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재무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공공재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유지·관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음.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는 민간 시세 대비 45.1%이며,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민간 시세 대비 14.8%로 저렴하게 공급되고 있으므로 수선유지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통해 공공주택사업자의 재정 부담을 완화해줄 필요가 있음.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전세전환[2]	비교시세 (민간 전세)	시세대비
전체평균[1] (40.8m² 기준)	24,153	182	72,594	160,854	45.1%
영구임대 (28.0m² 기준)	2,602	52	16,416	110,613	14.8%

주1: 전체평균은 공공임대주택 전체에 대한 평균값
2: 전세환산: 임대보증금+{월임대료×12개월/전세환산이율(4.5%)}
자료: 한국토지주택공사

둘째, 임대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수선비의 증가는 임대료 인상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수선비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영구임대주택 거주민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의 수선유지비용은 2020년 8,224억원에서 2024년 1조 4,258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는데, 수선유지비용의 증가는 임대료의 인상 요인이 될 수 있음.

[공공임대주택 수선유지 예산 현황]

(단위: 억원)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8,224	9,631	10,279	12,518	14,258

자료: 한국토지주택공사

셋째, 현재도 영구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에 대해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가 면제[51]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영구임대주택에 공급하는 수선유지용역까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넷째, 현재 국민주택 및 국민주택의 건설용역, 국민주택이거나 일정규모 이하인 공동주택의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청소용역 등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면제[52]함으로써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이를 영구임대주택의 수선유지용역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음.

□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영구임대주택의 임대료는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표준임대

---

5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및 제12호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5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고, 제8호의3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며, 제9호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9호의3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한다.

4의5.「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

52)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4의2.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같은 호 가목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관리주체"라 한다), 「경비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하 이 조에서 "경비업자"라 한다) 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건물위생관리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이 조에서 "청소업자"라 한다)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주택에 공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 및 청소용역

가. 수도권을 제외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의 주택

나. 가목 외의 주택으로서 1호(戶)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3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4의3. 관리주체, 경비업자 또는 청소업자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에 공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 및 청소용역

4의4.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이하 이 호에서 "노인복지주택"이라 한다)의 관리·운영자, 경비업자 및 청소업자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 및 청소용역

료로 책정[53]되므로 수선유지용역에 대한 면세가 거주민의 임대료 부담 완화로 직결되지 않을 수 있고, 실제 면세를 적용하더라도 수선유지용역에 대한 가격인하 없이 면세혜택이 수선유지 사업자의 이윤으로 흡수될 가능성이 있음.

둘째, 개정안은 조세특례를 규정하면서 별도의 적용기한을 두고 있지 않은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조세특례는 주기적인 평가를 위하여 적용기한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54]을 고려하여 개정안을 입법화하는 경우 적용기한을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수선유지용역에 대한 면세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자(LH)에 대한 지원으로 임차인의 부담 완화를 위한 면세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더라도 수선유지용역에 대한 가격 인하 없이 면세혜택이 수선유지 사업자의 이윤으로 흡수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53) 「영구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산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9-413호)
2) 표준임대료
표준임대료는 해당 주택가격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이하 "정기예금이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과 감가상각비, 수선유지비, 화재보험료, 대손충당금 및 국민주택기금이자를 합한 금액으로 하며 각 항목별 산출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감가상각비 : 건물내용년수 50년, 잔존가액 10%, 정액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나) 수선유지비 : 건축비의 1,000분의 5
다) 화재보험료(재해보험료) 및 기금이자 : 실제 지급금액
라) 대손충당금 : 감가상각비, 수선유지비, 화재보험료 및 국민주택기금이자를 합한 금액의 1%

54) 예를 들어, 국민주택규모 초과 공동주택에 대한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청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의2)의 적용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이고 영구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의5)의 적용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임.
다만,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한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청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의3) 등의 경우 적용기한이 없음.

문 의 처
02)6788-5147